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96
------	-----

2023. 9.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1일, 김원태 의원(찬성자 47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정례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9.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원태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이자 대표적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씨름 정책 마련 및 추동력 확보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씨름의 날에 필요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씨름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업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이자 대표적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씨름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나. 제정의 필요성

1) 현황

- 씨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로, 조선시대 이후 세시풍속으로 변모하여 민속씨름으로 전승되어 왔음.
- 그러나 1990년대 프로씨름단이 15개로 민속씨름의 중흥기를 거쳤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프로씨름단 운영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실업팀 및 학교팀도 감소하고 있음.

- 최근 씨름은 대형스타 부재와 기술씨름 쇠퇴로 침체기를 겪으면서 스포츠로서의 경쟁력 상실로 젊은 세대와 미디어의 외면을 받아오고 있음.
-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씨름협회가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나, 매년 서울시장배 씨름대회가 개최(약 1천만원 규모)되는 등 실질적인 실적이 저조함.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K-씨름 진흥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2) 조례의 필요성

-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대표적인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여가활동은 물론,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특히 경기도, 경남 창원시, 충남 태안군 등에서 씨름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서울시도 별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에 회원으로 등록된 종목단체가 77개에 이르고 있어, 이들 종목단체가 개별 조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서울의 도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씨름진흥이 시급성이 요구되고,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

다. 조문별 검토

1) 용어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제정안의 목적,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씨름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규정된 “씨름지도자”, “씨름시설”, “씨름단체” 용어의 뜻은 「씨름 진흥법」을 준용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음.

2) 씨름진흥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제정안은 시장이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씨름의 보급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씨름과 문화·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및 씨름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씨름의 날 지정(안 제5조)

- 제정안은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보급 진흥을 위하여 「씨름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씨름의 날 행사추진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라 씨름의 날을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을 고려하여 단오인 음력 5월 5일을 씨름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4) 씨름 단체 및 시설의 지원(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제정안은 시장이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씨름의 보급·진흥을 위하여 각종 씨름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씨름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씨름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씨름 전용경기장의 조성(안 제6조 제2항)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씨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특정 종목의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위임 규정이며, 조례상에 씨름 전용 경기장을 조성·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재원 확보 방안 등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라. 종합의견

-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각종 행사에 등장하는 전통적인 체육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

어 보존·전승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 대표 목록으로 북한과 최초로 공동 등재’ 되었음.

- 최근 시민의 관심 감소 등으로 씨름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씨름 진흥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씨름의 발전과 위상 제고 등 적극적인 씨름 진흥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서울시에 소속된 다수의 체육 종목과의 형평성, 이를 이끌어 나갈 서울시와 서울시 체육회 등의 스포츠 진흥 전략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9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1일

발 의 자: 김원태,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봉양순,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은림,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최진혁, 허훈, 홍국표
의원(48명)

1. 제안이유

-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이자 대표적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씨름 정책 마련 및 추동력 확보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씨름의 날에 필요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씨름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사업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씨름 진흥법」, 「씨름 진흥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발전시키고,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및 씨름협회, 씨름단,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고, 씨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씨름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씨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급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씨름과 문화·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6. 씨름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씨름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씨름 진흥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씨름의 날) ① 시장은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씨름의 보급·진흥을 위하여 「씨름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씨름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씨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씨름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씨름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씨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